

구제역 방역 및 후속대책 상황점검

이 혜 영 본회 조직지도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전국가축시장을 5월 11일부터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개장하되 개장전에 반드시 가축시장을 소독토록 조치했으며 다만, 이동제한지역내에 위치하는 가축시장(홍성, 광천, 충주, 오산, 파주 우시장)은 이번조치에서 제외되어 5월말까지 가축시장 폐쇄조치가 연장되며, 6월부터 해당 시·도지사가 적절한 시기에 개장토록 했다.



1. 구제역 동향

□ 구제역 발생신고 및 검사상황(5월 22일 현재)

○ 총 신고상황 : 77건

- 양성 : 15건(4월 16일 이후 발생 없음) - 음성 : 62건

□ 현재 파주, 화성, 용인, 홍성, 보령, 충주 지역에 국한됨

구제역 판정일자	주 소	축주명	축종	발생두수
3. 26	경기 파주시 파명면 금파리	김영규	젖소	15두
4. 01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이봉희	한우	8두
4. 01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최창국	한우	5두
4. 04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이상재	한우	1두
4. 04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매현리	전학수	한우	20두
4. 04	경기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심윤재	젖소	7두
4. 0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이종복	한우	16두
4. 04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인환	한우	5두
4. 09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갑환	한우	1두
4. 09	경기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권병주	한우	4두
4. 09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정현복	한우	1두
4. 11	충북 충주시 신니면 미수리	하구용	한우	6두
4. 13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재교	한우	1두
4. 14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서연철	한우	3두
4. 16	충남 홍성군 구항면 공리	박광민	한우	1두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

수매실적(5월 21일 현재)

- 소 : 12,578두
- 돼지 : 164,132두
- 자돈 수매실적 : 109,527두
- 모돈 수매실적 : 4,281두

하는 가축시장(홍성, 광천, 충주, 오산, 파주 우시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5월말까지 가축시장 폐쇄조치가 연장되며, 6월부터 해당 시·도지사 가 적절한 시기에 개장토록 함

□ 축산물가격 및 출하동향

(5월 20일 현재)

출하동향

구분	3월		4월		5월					
	3. 25	월평균	4. 4	월평균	5. 15	5. 16	5. 17	5. 18	5. 19	5. 20
소	755두	1,088	1,040	1,012	1,407	1,251	1,140	1,279	1,017	788
돼지	11,763	14,275	17,495	13,931	13,819	12,610	12,105	11,658	12,586	10,395

※ 3월평균은 3. 24~3. 31(일요일제외)평균임

산지가격동향

단위 : (소)천원/500kg, (돼지)천원/100kg

구분	3월		4월		5월					
	3. 25	월평균	4. 4	월평균	5. 15	5. 16	5. 17	5. 18	5. 19	5. 20
소	2,464	2,537	2,399	-	-	-	-	-	-	-
돼지	187	184	157	156	201	199	201	201	202	200

도매가격 및 수매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3월		4월		5월					
	3. 25	월평균	4. 4	월평균	5. 15	5. 16	5. 17	5. 18	5. 19	5. 20
쇠고기	9,726	9,442	8,979	9,027	9,679	9,382	9,065	9,253	9,245	9,751
돼지고기	2,397	2,607	2,261	2,486	2,927	3,096	3,004	2,983	2,887	2,916
(축공)	(2,524)	(2,598)	(2,288)	(2,442)	(2,962)	(3,079)	(3,028)	(3,019)	(2,966)	(2,947)

□ 전국가축시장 5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장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전국 가축시장을 5월 11일부터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개장하되 개장전에 반드시 가축시장을 소독토록 조치
- 다만, 이동제한지역내에 위치

성, 보령)의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해제

-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일
 - 파주(4. 19), 화성(5. 8), 보령(5. 8), 홍성(5. 10), 충주(5. 12), 용인(5. 13)
-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 종돈장의 새끼돼지는 검사후 타지역 이동을 허용하며,

- 인공수정은 농장주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되고,
- 반경 3km내의 원유도 폐기하지 않고 멸균처리후 유통이 허용되며,
- 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의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 30일 경과후 약 2개월간의 시험입식을 하여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재사육을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 또한 농림부는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경계지역에서 출하되는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수매는 종료되지만, 해제전날까지 농가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지역의 수매조건으로 수매를 실시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키로 하였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와 축산·수의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호지역내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방안, 이동제한 지역내 도축 부산물의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부문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2. 추진상황 및 대책

□ 이동제한 해제요건

-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 가축이동제한 등 방역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 경계지역(반경 10~20km) 가축 살처분 완료일부터 3주 경과시까지 추가발병이 없고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방역규제 사항을 해제

- 보호지역(반경 10km이내)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을 고려, 1차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30일 경과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하되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 경계지역의 방역규제는 해제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

- 사료·원유·도축부산물·축산분뇨·음식물쓰레기 등은 정상 유통하되, 일정기간 질병예찰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

○ 보호지역은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방역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

- 3km이내 원유도 멸균유통, 종돈장 새끼돼지는 검사후 타지역 이동

- 기타 사료·볏짚·축산분뇨 등도 자체사용, 수송차량의 소독후 통행

-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의 경우 살처분 완료 30일 경과후 약 2개월간의 시험입식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 입식 허용

□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보호지역의 방역규제 조정내용

구 분	방역규제 조정 내역
① 예방접종가축	지정도축장 출하허용
② 원유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고온멸균 처리후 유통
③ 도축부산물	소독·폐기, 랜더링시설에서 열처리 후 폐기 또는 재활용, 도축장 안에서 심부온도70℃로 30분 이상 열처리후 식용유통(냉장처리된 정육만 유통)
④ 축산분뇨	농장밖 반출금지. 다만, 축분발효비료 원제품·소독처리된 액비는 유통허용하고 완전발효된 액비나 액상분뇨(슬러리)는 지역내 살포허용, 지역내 공동처리시설로 운송시도 반출허용
⑤ 배합사료	농장밖 반출금지, 농장내 자체 소진
⑥ 건조·볏짚	국내산은 자체소진, 중국산은 역학조사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사용여부 결정
⑦ 음식물쓰레기	소독처리후 반출 또는 지역내 매몰
⑧ 인공수정	지역내 생산금지, 타지역산 정액이나 구제역발생 15일전·최종발생 15일이후 생산된 정액을 농장주가 자기 가축에 직접 실시하는 경우 허용
⑨ 사료공장·차량	세척·소독후 운행
⑩ 우유공장·차량	세척·소독후 운행
⑪ 가축수송차량	지정도축장의 우제류 차량은 통행금지
⑫ 종축장 새끼	농장밖 이동금지. 단, 공인기관에 등록된 순종돈, 원종돈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7일(소는 14일)후 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 허용
⑬ 자연교배	금지
⑭ 가축시장	폐쇄조치 유지
⑮ 기타 사람·차량	소독후 통행허용

□ 경계지역 해제에 따른 원유집유

○ 3km이내 : (중전)소독후 폐기 또는 매몰 → (조정)유업체별 집유, 고온멸균처리 후 유통

○ 10~20km : (중전)UHT방식의 가공처리 → (조정)유업체별 자체실정에 맞게 집유처리

□ 경계지역이 해제된 보호지역내 인공수정 조치

○ 자가 인공수정
-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발생 농장 및 인근농장의 구제역 감수성 가축이 살처분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최초발생

15일전부터 최종발생 15일 후까지 생산된 정액은 폐기하고 그 외의 기간에 자가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농장주가 직접 자기농장의 가축에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 인공수정사를 통한 인공수정
- 농장주 및 인공수정사가 안전방역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 인공수정행위를 위한 농장 출입시 소독관리 철저 : 인공수정사의 인공수정 행위시 1회용 방역복 사용 의무화
- 인공수정 기구는 마리당 1회 사용 및 소독관리 철저 이행
- 1일 1농장에 한하여 인공수정을 하여야 하며, 인공수정

대장 기록·비치 의무화

- 시군에서 구제역 예방교육을 받은 인공수정사에 한함
- 관할 시장·군수는 가축방역관 등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수정이 실시되는 농장에 대하여 안전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 실시

□ 구제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침

1) 지급목적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현행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15호, 99. 4. 12)”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 시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긴급방역조치에 협력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있음

2) 보상금 지급 지침

가. 지급대상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에 의거

시·도지사가 살처분을 실시한 우체류 동물

- 살처분한 가축과 같이 있었던 물건중 오염이 의심되어 소각·매몰한 배합사료, 조사료, 진초, 볏짚 등(이하 “오염물건”이라 함)

나. 지급요율

- 살처분 가축 :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에서 축종별,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의 100%

- 오염물건 : 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의 100%. 금액의 5분의 2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과 같이 지급하고 5분의 3은 가축 재입식(살처분 후 3개월 예상)시 현물로 공급

다.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

- 위원회는 평가 당시 살처분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시·군·구)안에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여 상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축종별·품종별로

상한가격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가격의 등락폭이 커 조사가 어려운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함
가) 젓소 고능력우

- ◆ 고능력우 인정 : 전국 연평균 마리당 산유량 6,135kg에 비해 12% 이상을 초과하여 산유하는 젓소 : 평균 산유량 확인 : 평가대상 젓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최근 1개월간 지급한 원유대급의 평균

- ◆ 고능력우 가격 : 일반 젓소가격(축협조사월보) + (평균산유량초과유대의 순수익금 × 이용잔여년수)

나) 종축

- ◆ 종축의 인정 : 종축개량기관에 등록된 종축 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위원회가 종축으로 인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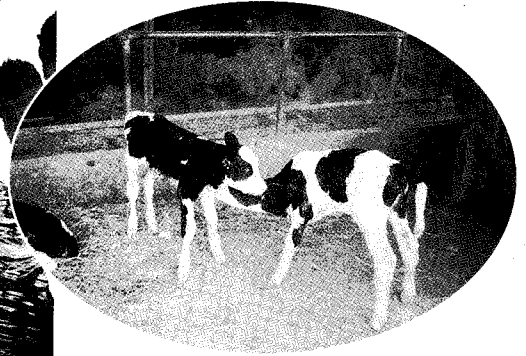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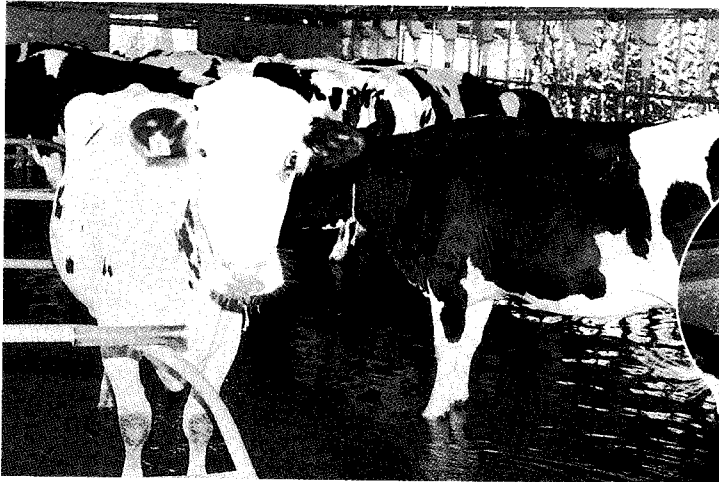
- ◆ 종축의 가격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종축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 다) 오염물건 : 당해 물건의 구입 당시 거래 영수증 등의 기재금액

라. 평가반(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살처분 농장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 과장
- 위 원





- 축산위생연구소 등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5급상당 공무원 1명
- 지역축협 또는 업종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축거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1명
-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1명
- 축종별 농가 대표 1명
- 한우·육우·낙농·양돈 양육 등 해당 축종의 생산자 단체 시·군지부 직원 2명

마. 보상금의 결정 등

- 위원장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오염물건의 결정금액은 보상금액(40%)과 현물 지원금액(60%)을 구분 작성한 후 오염물건의 현물 지원금액 결정사항은 대상농가에게 문서로 통보조치

바. 지급방법

- 오염물건의 현지가 보상차액의 현물 지급 절차
 - 지급대상 농가는 재입식 후 관할 시·도(군)에 현물 공급신청
 - 시·도(군)는 “마”의 현물 지원금액에 의한 당해 물건을 농가에 공급한 후 축협중앙회(기금관리부)에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교부금 결정 통보시 농가에게 사료 등 물건을 공급한 자의 은행계좌번호 기재
 - 축협중앙회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 기타 보상금의 지급신청·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15호, 99. 4. 12)”에 의함

□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방안

1) 특별관리 필요성

- 구제역 예방접종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 현재 구제역이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발생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을 특별관리 함으로써 국내 구제역 방역정책을 확립하고 우체류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출 재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익과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2) 특별관리 대상

- 관리지역 :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 대상가축 : 예방접종을 받은

우제류 가축(예방접종에 누락된 우제류 가축도 포함)

3) 예방접종 실시

- 1차접종 : 우제류 가축 전체 강제실시
- 2차접종 : 2차접종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우제류 가축 모두 실시. 다만, 돼지에 대하여는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회신결과에 따라 2차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결정

4)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 종축, 한우암소, 젖소, 모돈, 사슴 등 장기간 사육되는 가축
 - 축종에 따라 지명을 표시하는 약어를 이표에 표기하거나 문신 표시
- 비육우, 육성돈 등 단기간 비육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은 가축방역관이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다만, 돼지는 농장의 돈군별로 발급

5) 사후관리

가. 관리대상 작성 및 비치

- 예방접종지역 시군 : 예방접종가축 관리대상 비치
 - 주소 / 성명 / 축종 / 두수 / 접종일 / 판매일 / 판매목적 (도축·매매 등)
- 도축장 관할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 등)

- 주소 / 성명(축주, 도축의뢰인) / 축종 / 두수 / 도축일 / 구제역 임상검사 등 특이 사항

나. 예방접종 가축의 관리

- 예방접종 지역
 - 관할 시군 : 가축 방역관이 주기적인 임상검사 실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이상 가축 또는 의심가축에 대해 항원·항체검사 실시
- 예방접종 지역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타지역 이동시 관할 시군(도축출하의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도축검사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도축을 중단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즉시 통보조치
 - 도축장 근무 검사원은 이표·문신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 관할 시군은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 등 이동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경유 농림부장관에 보고

6) 예방접종 전두수 조기 실시를 위한 조치

- 예방주사 미접종 가축은 정부 구매에서 제외하고 도축도 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방주사 실시를 명령하고 거부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 및 제 44조의 규정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예방접종 미실시로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처분을 하게 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검토

□ 절박우 구매지침

- 구매대상 : 구제역통제, 진료금지, 도축지연 등으로 제때 구매·도축되지 못하여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소
- 구매가격 : 규격구매 이상의 소의 경우 구매가격의 80%

□ 이동제한구역 소 구매가격 조정(5. 13)

- 소 구매가격을 현행 3. 27~4. 1간 가축시장 평균가격에서 5. 1~5. 6간 서울 축협공판장 지육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암소 2,663천원, 수소2,444천원, 육우(kg당)3,198원(당초)
 - 암소 2,853천원, 수소 2,604천원, 거세우 3,194천원, 육우 1,746천원(변경)

□ 보호지역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낙농기 피해보상

- 이동제한 기간중 인공수정 미실시, 판로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정상화시까지 경영안정자금(501억원)을 융자 지원 ☺